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양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300호)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585호)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593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4
1.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디지털 교육 실시	4
2.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연령 및 취약 지역 거주 여부 고려	14

I. 개요

1. 양문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30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양문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2. 16.
- (3) 회 부 일 : 2025. 12.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정보전달, 여론형성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바일 금융 등 디지털 미디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디지털 금융사기나 가짜뉴스와 같은 위험에 노인들이 노출되어 있음. 현행법에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체계적인 교육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정보 이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2.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58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2. 5.

(3) 회 부 일 : 2026. 2.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 및 도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에 따른 돌봄 및 안전 공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만을 두고 있어, 돌봄이 시급한 초고령자나 취약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시 연령이 높은 노인과 농촌 및 도시 외곽 등 취약지역 거주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 27조의2제2항 신설 등).

3. 백선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59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백선회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2. 5.
- (3) 회 부 일 : 2026. 2.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키오스크 등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주문·이용 등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최신 기기 사용법이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소외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해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디지털 소외를 줄이고 이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2항 신설).

II. 검토 의견

1.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디지털 교육 실시(양문석의원안·백선회의원안)

□ 양문석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세대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고(안 제27조의5 신설),

현 행	양문석의원안
<u><신 설></u>	<u>제27조의5(노인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u> <u>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세대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이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u> <u>1.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u> <u>2. 디지털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u> <u>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 및 소통 능력 향상</u> <u>4. 디지털 금융사기, 허위정보 등 디지털 미디어 역기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u>

	<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노인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내용·방법,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

백선회의원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등).

현행	백선회의원안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생략) <u><신설></u>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
<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u>	<u>③ -----</u> <u>제1항 및 제2항-----</u> ----- -----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 -----.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 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 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비스·보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

□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전자상거래·정보전달·여론형성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70대 이상 노인의 경우 인터넷쇼핑과 인터넷뱅킹 이용률은 각각 18.3%, 31.2%에 그치고 있으며 인터넷 비이용자 비율도 32%에 이르고 있음.

< 정보서비스별 이용률·경험률(2024) >

(단위: %)

연령대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평균
인터넷쇼핑 (만 12세 이상)	—	75.2	100	99.9	99.7	86.6	46.1	18.3	78.6
인터넷뱅킹 (만 12세 이상)	—	53.2	93.5	94.6	94.1	90.7	74.0	31.2	80.7
동영상서비스 (만 3세 이상)	94.6	97.7	99.6	99.2	98.4	96.2	92.2	79.3	95.4
인공지능(AI) (만 6세 이상)	67.9		71.2	71.6	69.4	55.6	43.5	28.6	60.3
생성형 AI (만 12세 이상)	—	41.3	58.9	50.1	37.8	22.8	15.0	7.2	33.3

* 자료: 「202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인터넷 비이용자 비율(2024) >

(단위: %)

연령대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평균
인터넷 비이용자 (만 3세 이상)	8.0	0.5	0.4	0.5	0.6	1.2	4.3	32.0	5.5

* 자료: 「202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60세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인터넷 정보 사실성 판단 능력’도 70세 이상이 전체 평균의 65.1%에 그치는 등 금융사기나 가짜뉴스와 같은 위험에 노인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2021~2023) >

(단위: 억원, %, %p)

구 분	2021년		2022년(A)		2023년(B)		증감(B-A)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대 이하	52	(3.1)	92	(6.4)	231	(12.0)	+139	(5.6)
30대	121	(7.3)	53	(3.7)	188	(9.7)	+135	(6.0)
40대	219	(13.2)	145	(10.1)	249	(12.9)	+104	(2.8)
50대	650	(39.3)	477	(33.1)	560	(29.0)	+83	(△4.1)
60대 이상	612	(37.0)	673	(46.7)	704	(36.4)	+31	(△10.3)
합계	1,654	(100.0)	1,440	(100.0)	1,931	(100.0)	+491	-

* 피해구제신청접수(1차 계좌) 기준(법인 제외)

* 보이스피싱: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기관을 사칭하면서 금품을 편취하거나 자녀납치, 사고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약점을 노려 금품을 편취하는 수법

* 자료: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피해, 전년比 1.5배 ↑ -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 3. 8.)

< 연령별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평균) (2020) >

(단위: 점, %)

구 분	콘텐츠 구분능력	인터넷정보 사실성 판단 능력	메시지 비판능력	미디어이미지 비판능력	산업규제 이해능력
전체 평균	20.4	29.5	16.8	17.9	21.6
13~19세	22.0	31.4	17.7	17.8	21.0
20~30세	23.4	34.1	18.1	19.0	24.0
31~40세	23.1	34.1	18.0	19.4	24.0
41~50세	22.5	32.7	17.6	18.6	23.6
51~60세	21.0	31.1	17.0	18.5	22.8
61~70세	18.6	27.0	16.2	17.4	20.3
71세 이상 (평균 대비)	14.4 (70.6%)	19.2 (65.1%)	14.4 (85.7%)	15.6 (87.2%)	16.5 (76.4%)

* 자료: 「인지욕구와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 관점의 노년층 디지털 격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2

□ 개정안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거나(양문석의원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의 근거를 규정할 경우(백선희의원안), 노인의 정보 이용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사기 및 가짜뉴스 등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舊「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21065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령자¹⁾ 등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배움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었으며²⁾,
2026년 1월 22일부터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이 시행되고 있음.

「디지털포용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디지털역량”이란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제14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 디지털 역량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342만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2026년도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2) 2025. 1. 21. 제정(2026. 1. 22. 시행)된 「디지털포용법」 부칙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현재 동 내용은 삭제되었음.

예산은 411억원이 편성되었음. 대한노인회 등과 협력하여 경로당·복지관 등에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함.

< 디지털배움터 사업현황 >

□ 사업 개요

- (개요)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폰부터 생성형 AI 활용 방법까지 다양한 디지털 역량교육 제공('20~)
- (사업추진 현황) '20년부터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 342만명 대상 디지털 역량교육 제공 ('26예산: 411억원)

< 디지털 배움터 연도별 교육생 현황 >

연도	'20	'21	'22	'23	'24	합계
교육생(만명)	42.8	65.6	79.3	99.6	54.5	341.8

□ 사업 운영

- ① (거점센터) 지자체·관련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국 37개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지정·운영
 - 거점센터에 10인 이상 교육이 가능한 교육장 및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교육용 키오스크, 에뮬레이터 등의 체험이 가능한 디지털 체험존 설치·운영

< 지자체별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개소 수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소	4	2	2	2	2	2	1	1	6	1	2	1	2	3	3	1	2	37

- ② (찾아가는 교육) 관련 단체*와 협업을 통해 **경로당·복지관 등에 찾아가는 교육('24년 3,000개소 이상)**을 제공하고, 계층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한노인회(고령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인) 등

**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법, 장애인 대상 ICT 보조기기 사용법 등

* 자료: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설명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교육부에서도 「평생교육법」제39조³⁾에 따라, 2024년부터 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한글햇살버스 사업’

- 3) 「**평생교육법**」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을 실시하고 있음.

< 한글햇살버스 사업현황 >

- ☐ (추진배경) 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도입’하여, 비문해·저학력 고령층*의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 문해교육 참여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93.5%('23. 기준)
- ☐ (주요내용) 단기 집중 교육이 가능한 키오스크 이용법, 태블릿·스마트폰 등 기기 활용법, 배달·쇼핑앱 이용 방법 등 교육 진행
 - 디지털 교육 기기·교재 등 구비하여 경로당·강당·지역 회관 등 지역 내 가용한 장소로 방문
- ☐ (26 지원 유형 및 규모) 9개 내외 지역 선정, 버스이동형/교실방문형 두 개 유형에 대해 각각 최대 1억원, 7천만원 지원 등 총 7억원

* 자료: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한글햇살버스 사업 신청하세요’(교육부 보도자료, 2024. 3. 14.) 및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교육부)

- ☐ 금융위원회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법」⁴⁾에 따라, 「2026년 금융교육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시니어 금융아카데미(자산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등),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고령층 금융교육 추진방향 >

- ☐ [금융피해 예방 교육] 고령층의 취약점을 노리는 금융사기·사고로부터 고령층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반복·집중적 금융교육 실시
 -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 상장예정 주식 투자 유도, 스캠 코인 등 신종 금융사기의 최신 수법을 반복적으로 교육
 - 고위험 상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집중 실시*
- * (예) 고수익 투자상품 가입시 쉽게 서명하지 않는 습관, 계약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 청약철회권 활용 방법 등 교육
- ☐ [노후자산관리 교육] 안정적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자산 관리 및 자산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 안정적 현금흐름 창출을 위해 연금 등 은퇴 자산의 포트폴리오 조정 및 활용방안 등 교육
 - 갑작스러운 건강악화 등에 대비하여 유언대용신탁 등 금융상품과 사전증여·성년후

4)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30조(금융교육)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견 제도 등도 안내하고 활용사례 공유 ○ 치매머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매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보험상품·신탁 등도 안내 □ [디지털 금융교육] 고령층이 디지털 금융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고령층에 대한 디지털 금융교육을 지속 강화 ○ 스마트폰 뱅킹, 간편결제, 키오스크 이용 등 생활밀착형 내용을 중심으로 용어설명부터 실제 화면까지 단계적·반복적 교육 ○ <u>지자체, 복지기관 등과 협업하여 고령층 친화적 공간을 직접 방문</u>하고, 큰 글씨와 시각자료 등 고령친화적 콘텐츠 지속 확충

* 자료: 「2026년 금융교육 추진방향」(금융위원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각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역량교육), 교육부(문해교육), 금융위원회(금융교육)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경로당·노인복지관에서 금융사기예방 및 정보 판별 등 노인의 디지털문해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디지털문해교육 관련 사업 현황 >

구 분	경로당	노인복지관
금융사기 예방	□ (보이스피싱·스미싱 대응) 유관기관(경찰, 금융기관)과 연계한 사례 중심의 예방 및 캠페인성 교육이 주를 이룸 □ (교육내용) 지인·기관 사칭 및 부고 스미싱 등 최신 수법 공유, 30분 내 신고 요령 교육	□ (보이스피싱·스미싱 대응) 단순 예방을 넘어 모바일 뱅킹 실습 및 보안 설정을 통해 방어 역량을 강화함 □ (교육내용) ○ (보안실습) 구글 계정 2단계 인증, 해외 로그인 차단, 악성 앱·스미싱 문자 차단 설정 ○ (금융 리터러시) 모바일 뱅킹 이체 실습 병행 및 디지털 금융 효능감 증진
정보 판별	□ (가짜뉴스 구별 및 올바른 미디어 이용) 독립된 강좌보다는 스마트폰 교육 중 ‘신뢰할 수 없는 정보 걸러내기’로 통합 운영 □ (교육내용) ○ (정보식별) 스팸 문자, 허위·과장 광고, 공공기관 사칭 메시지 구별법 ○ (피해예방) 잘못된 정보로 인한	□ (가짜뉴스 구별 및 올바른 미디어 이용) AI 기술을 활용한 검색과 콘텐츠 진위 판별 교육을 포함함 □ (교육내용) ○ (정보판별) AI 생성 이미지·딥페이크 구별, AI 비서(렌즈 등) 활용 검색 ○ (필터링) 광고 차단 브라우저 사

	방문·통신판매 사기 예방 및 공공 앱(정부24) 활용 정보 확인	용법,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 비판적 이해
기타	☐ (스마트폰 활용,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교육) 단순 사용법을 넘어 체험형 실습과 AI·헬스케어 활용으로 확대 추세 ☐ (교육내용) ○ (실습 및 체험) 키오스크(주문), 기차표 예비, AI 스피커·챗GPT 체험, 건강관리 앱 활용	☐ (스마트폰 활용,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교육) 콘텐츠 생산(영상 제작)과 전문 강사 양성 등 생산자 역량 강화에 중점 ☐ (교육내용) ○ (창작 및 양성) 브이로그·쇼츠 제작, 유튜브 채널 운영,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자격 취득 ○ (심화실습) 미디어 센터 현장 학습 및 실생활 편의 서비스 심화 활용

*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역량 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포괄적·종합적인 법률인 「디지털포용법」에서 노인을 포함하여 더 넓은 대상범위(55세 이상인 사람)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법」에 별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노인 대상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실시 근거를 규정할 실익은 적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의견 >

보건 복지부	◦ 디지털 역량 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포괄적·종합적인 법률인 「디지털포용법」에서 노인을 포함하여 더 넓은 대상범위(55세 이상인 사람)를 규율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노인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은 디지털포용법 상 디지털 역량 교육으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입법례가 부재한 점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법에 별도로 입법할 실익이 적은 것으로 사료됨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 「디지털포용법」 제14조, 15조에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역량 함양 지원 근거에 대해 기규정 ◦ 또한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대응법까지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등을 지원 중(디지털배움터)으로, 별도로 노인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조항 신설 불요
교육부	◦ 「노인복지법」에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보다는 문해교육의 정의 및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에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 ◦ 「평생교육법」에서 이미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포함한 문해교육의 정의와 국가지

	자체의 지원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교육을 포함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한글햇살버스 등) 운영 중
--	---

2.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연령 및 취약 지역 거주 여부 고려 (임종득의원안)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 및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연령 및 취약지역 거주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생략) <u><신설></u>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연령 및 취약지역 거주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대상·내용, 취약지역의 범위, 서비스 연계 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홀로 사는 노인이란 일반적으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의미하는데,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25년 기준 약 233.6만명의 노인이 홀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홀로 사는 노인 인구 추이 >

(단위: 만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독거노인(65세이상)	161.8	176.9	192.3	205.8	219.7	233.6
서울특별시	25.2	27.7	30.1	32.2	34.0	35.8
부산광역시	13.2	14.4	15.6	16.8	17.7	18.6
대구광역시	8.1	8.9	9.6	10.3	11.0	11.7
인천광역시	7.4	8.2	9.1	9.8	10.8	11.7
광주광역시	4.1	4.5	5.0	5.4	5.7	6.1
대전광역시	4.0	4.5	4.9	5.2	5.7	6.1
울산광역시	2.7	3.0	3.3	3.6	3.9	4.2
세종특별자치시	0.5	0.6	0.7	0.7	0.8	0.9
경기도	28.7	31.9	35.3	38.7	42.4	46.2
강원도	6.8	7.5	8.1	8.8	9.3	9.9
충청북도	6.1	6.6	7.2	7.6	8.2	8.7
충청남도	8.3	9.0	9.7	10.2	10.9	11.7
전라북도	8.5	9.2	9.8	10.3	10.7	11.2
전라남도	10.4	11.0	11.6	12.0	12.4	12.8
경상북도	13.0	14.0	15.0	15.6	16.5	17.3
경상남도	13.0	14.1	15.3	16.2	17.2	18.2
제주특별자치도	1.8	2.0	2.2	2.3	2.5	2.6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가구추계(보건복지부 제공)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27조의2제1항)⁵⁾,

5)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음.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대상	○ 돌봄이 필요*한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기초연금 이하) 57.6만명 * 사회·신체·정신영역 조사지표 활용, 돌봄필요도를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	○ 독거노인(소득무관), 고령부부(부부 모두 75세 이상&기초연금 이하), 중증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취약가구) 약 28만 가구
사업 내용	○ 생활지원사가 직접 안전확인·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특화지원·퇴원환자 단기지원 등 서비스 제공 *(일반)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 (중점) 주2회 방문, 주1회 전화	○ ICT 장비 활용, 24시간 모니터링 통한 비대면 안전 확인·응급상황 대처 지원 *정기 안부확인(6개월 1회 방문, 3개월 1회 이상 전화) 포함
수행 체계	○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 시군구에서 수행기관 선정·위탁	○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 시군구에서 수행기관 선정·위탁
'26년 예산 (국비기준)	○ 5,894억원 (서울 30%, 지방 70%)	○ 329억원 (보조율 50%)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유사돌봄서비스 대상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됨

□ 위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가구상황(독거), 소득기준, 신체·정신·사회 영역의 돌봄필요도를 기준⁶⁾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바, 대상자의 연령이나 취약지역 거주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6)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100점 만점 중 ▲사회영역 40점(가족구성, 관계, 사회·경제활동 등), ▲신체영역 30점(청결위생, 식사, 배변, 하지 기능, 집안일, 질병상태 등), ▲정신영역 30점(우울감, 화기관리, 의사소통, 계산능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구성, 식사 준비, 주거 환경, 경제적 여건과 일상생활 수행 정도, 우울감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돌봄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일반/중점돌봄군 적용) >

- **(대상자)**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중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등
- **(대상자 선정 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활용하여 조사 실시
 - 사회영역(S), 신체영역(P), 정신영역(M) 3개의 영역으로 구분
 - 각 영역별 7~9개 지표·항목, 전체 영역 총 23개 지표·항목으로 구성
 - * 사회영역 40점, 신체영역 30점, 정신영역 30점, 총 100점
- 각 영역별로 지원 필요도를 '상', '중', '하'로 평가한 후 일반 또는 중점돌봄군 선정
 - * 초과 수요 시 소득수준(저소득자 우선), 대상자 선정 기준 고득점자 등에 대하여 우선제공

□ 다음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경우에는 독거노인(소득무관), 고령부부(부부 모두 75세 이상 및 기초연금 이하), 중증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취약가구)을 지원하며, 초과수요 시 대기자의 소득수준·연령 등 기준⁷⁾에 따라 우선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최근 급증하는 독거노인 인구⁸⁾와 한정된 복지 자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연령과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지원

7) 소득, 연령, 장애 정도, 연고자 유무 등 7개 기준

8) 2023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13만 8,107가구로 집계되고 있으며, 65세 인구 중 5명 중 1명이 독거노인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다만, 연령과 취약지역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신체·정신적인 상황, 그 밖에 복합적인 요소가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498